



제434회국회(임시회)폐회중
제4차 국토교통위원회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공공기관 지방이전 시
혁신도시와 혁신도시 외 지역 간 균형 강화 》
■ 민홍철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4084호)

2026. 4.

국 토 교 통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곽현준

목 차

I . 민 홍 철 의 원 대 표 발 의 (제 2204084 호)	1
1. 제 안 경 위	1
2. 제 안 이 유 및 주 요 내 용	1
3. 회 부 경 과	2
4. 검 토 의 건	4
가. 공 공 기 관 지 방 이 전 시 혁 신 도 시 와 혁 신 도 시 외 지 역 간 균 형 강 화 (안 제 25 조 제 2 항 제 4 호 신 설)	4

I. 민홍철의원 대표발의(제2204084호)

1.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민홍철의원 등 10인

나. 발 의 일 : 2024. 9. 19.

다. 회 부 일 : 2026. 3. 6.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난해 기준 대한민국은 인구의 절반 이상(50.6%)이 국토의 11.8%에 불과한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음. 이러한 수도권 집중 현상은 지역 간 인구 자연 증감 차이가 아닌, 지역 간 이동에 따른 것으로 청년층의 수도권 유입이 가장 큰 요인으로 제기되고 있음.

무엇보다 비정상적인 수준의 ‘수도권 일극체제’는 일자리·문화·의료 등 모든 부문의 격차를 심화시키는 악순환을 초래하여, 국가균형발전을 중대히 저해하고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고 있어 특단의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시점임.

현행법은 혁신도시는 수도권이 아닌 지역의 광역시, 도, 특별자치도 별로 지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기업과 대학이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공공기관 이전에서 소외된 기존 10개 혁신도시 외 지방은

구도심 공동화가 심화되는 등 지방도시 간 양극화가 벌어지고 있어, 혁신도시 지정 및 지원과 관련하여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정책적 고려가 필요한 상황임.

아울러 1차 공공기관 이전이 공공기관 본사 중심으로 이뤄져, 핵심 기능이 수도권에 그대로 유지되고 있어 공공기관 지방이전의 균형발전 효과가 미흡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인력의 추가적인 이주 및 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여건 조성으로 보다 내실있는 혁신도시 육성·발전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

이에 신규 혁신도시 지정 시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우선 지정 근거를 마련하고, 지방이전 대상에 부속 소속기관, 연구기관도 포함하도록 하여 혁신도시를 지역발전 거점으로 육성하고 지역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에 강화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22조제1항 및 제24조제4항 신설, 제25조제1항 등).

3. 회부 경과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의 공동 소관 부처로는 기획재정부(현 기획예산처), 행정안전부 및 산업통상자원부(현 산업통상부)가 지정된바, 2024년 9월 19일 발의된 동 개정안은 같은 해 9월 20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회부되었고, 같은 해 11월 20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 상정 및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 회부가 이루어졌음.

이후 제25차 지방시대위원회(2026. 2. 2.)에서 공동 소관 부처에 국토교통부를 추가하는 안건이 심의·의결되고, 정부로부터 국회에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의 소관 부처 변경에 따른 협조 요청이 제기된바, 국토교통부 소관에 해당하는 동 개정안이 2026년 3월 6일 국토교통위원회로 회송됨.

대표발의	제출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회부일(회송일)
		회부일	전체회의 상정 (소위원회 회부)	소위원회 상정	
민홍철의원	2024. 9. 19.	2024. 9. 20.	2024. 11. 20.	-	2026. 3. 6.

4. 검토의견

가. 공공기관 지방이전 시 혁신도시와 혁신도시 외 지역 간 균형 강화(안 제25조제2항제4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25조(공공기관의 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활성화) ① (생략) ② 정부는 혁신도시시책을 추진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 3. (생략) <u><신설></u> 4. (생략) ③ ~ ⑦ (생략)	제25조(공공기관의 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활성화) ① (현행과 같음) ② ----- ----- -----. 1. ~ 3. (현행과 같음) <u>4. 혁신도시와 혁신도시가 아닌 수도권 외의 지역 간 이전대상공공기관의 균형적 배분에 관한 사항</u> 5. (현행 제4호와 같음) ③ ~ ⑦ (현행과 같음)

개정안은 ‘혁신도시시책’ 추진 시 고려사항에 “혁신도시와 혁신도시가 아닌 수도권 외의 지역 간 이전대상공공기관의 균형적 배분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려는 것임.

현행법 제25조제1항¹⁾은 정부로 하여금 이전대상공공기관을 단계적으로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한 공공기관 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시책, 즉 ‘혁신도시시책’을 추진하도록 하면서,

1)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5조(공공기관의 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활성화) ① 정부는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이전대상공공기관”이라 한다)을 단계적으로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한 공공기관 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시책(이하 “혁신도시시책”이라 한다)을 추진하여야 한다.

같은 조 제2항2)에서 혁신도시시책 추진 시 지방자치단체의 유치계획 및 지원, 이전대상공공기관별 지방이전계획, 혁신도시 활성화 및 인근 지역과의 상생발전, 그 밖에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혁신도시시책 등에 따라 혁신도시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을 촉진하고 지역 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³⁾으로 하는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혁신도시법”이라 함) 제29조제1항 본문⁴⁾은 이전공공기관⁵⁾이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것을 원칙으로 규정하면서도,

2)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5조(공공기관의 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활성화) ② 정부는 혁신도시시책을 추진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지방자치단체의 유치계획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이전대상공공기관별 지방이전계획에 관한 사항
3. 혁신도시 활성화 및 인근 지역과의 상생발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3)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시책 등에 따라 수도권에서 수도권이 아닌 지역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 등을 수용하는 혁신도시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해당 공공기관 및 그 소속 직원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혁신도시를 지역발전 거점으로 육성·발전시키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을 촉진하고 지역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4)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9조(이전공공기관의 지방이전) ① 이전공공기관은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5)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공기관”이라 함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4호의 기관을 말한다.
2. “이전공공기관”이라 함은 수도권에서 수도권이 아닌 지역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제29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개별이전하는 공공기관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같은 항 단서⁶⁾에서 지역의 특성과 이전공공기관의 특수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이전공공기관과 이전공공기관이 이전하는 지역의 시·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혁신도시 외의 지역으로의 이전, 즉 개별이전을 인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2026년 4월말 기준 공공기관 지방이전 현황에 따르면, 이전대상공공기관 총 150개 기관 중 혁신도시 이전 기관은 109개, 세종특별자치시 이전 기관은 20개, 개별이전 기관은 21개 등으로(10쪽 참고자료), 공공기관 지방이전은 혁신도시시책 및 「혁신도시법」 등에 따라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추진된 것으로 나타남.

그런데 현재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은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을 단계적으로 비수도권 지역으로 이전함으로써 인구의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려는 취지에서 시행되고 있으나,

그간의 공공기관 지방이전 정책이 혁신도시 활성화에만 집중되어 혁신도시가 아닌 비수도권 지역의 발전이 제한적이었으므로, 공공기관

6)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9조(이전공공기관의 지방이전) ①이전공공기관은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지역의 특성과 이전공공기관의 특수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이전공공기관과 이전공공기관이 이전하는 지역의 시·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62조에 따라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혁신도시 외로 개별이전을 인정할 수 있다.

지방이전 정책의 추진 시 비수도권 지역 중 혁신도시와 혁신도시 외 지역 간 불균형 해소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현행법에도 ‘신설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입지 결정 시 혁신도시에 국한하지 않고 비수도권 지역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하여 일부 균형을 도모하는 측면⁷⁾이 있기는 하나,

개정안은 공공기관 지방이전 시에도 혁신도시와 혁신도시 외 지역 간 이전대상공공기관의 균형적 배분을 고려하도록 함으로써, 인구감소 및 지역 소멸 등의 위기에 봉착한 비수도권 지역의 균형발전을 제고하려는 취지라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보임.

다만, 현행법상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은 혁신도시로의 공공기관 이전을 촉진하여 혁신도시를 지역발전 거점으로 육성·발전시키려는 정책 목적에 따른 것으로,

혁신도시 외 지역으로의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확대하는 경우 지역발전 거점의 조성 및 확산이라는 목표의 변동이 수반될 수 있는바, 공공

7)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5조(공공기관의 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활성화) 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공공기관(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 기관은 제외한다)을 설립하거나 신규로 인가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고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입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도권이 아닌 지역으로의 입지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라 설립되거나 신규로 인가된 공공기관(이하 “신설 공공기관”이라 한다)의 입지 결정에 대한 심의절차, 제출 서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기관의 지방이전 원칙 변경에 대해서는 지역균형발전 및 국가경쟁력 강화라는 큰 틀에서의 입법정책적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한편, 기존의 혁신도시 지역은 지역발전거점 조성이라는 지정 취지를 고려하여 기존 혁신도시에 공공기관의 추가적인 이전이 필요하다는 입장인 반면, 혁신도시 외 지역은 지역 소멸 방지 등을 위해 혁신도시 외 지역으로의 공공기관 이전이 필요하다는 입장으로, 공공기관 이전 원칙에 관하여 지역 간 이견⁸⁾을 고려할 필요가 있고,

이와 관련된 다수의 법률안이 국토교통위원회 또는 행정안전위원회 등에 회부되어 있으므로, 그 심사경과를 참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공공기관 이전 원칙 변경과 관련된 법률안 현황】

법률안	대표 발의	주요내용	의안번호 (발의일)	소관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윤덕 의원	전북자치도로 이전하려는 경우 기존 혁신도시 인근지역 등으로 이전 허용 특례	제2200143호 ('24.6.5.)	행정안전위원회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희승 의원	인구감소지역 중 지정된 혁신도시로 이전 우선 고려	제2200145호 ('24.6.5.)	국토교통위원회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희승 의원	인구감소지역 중 지정된 혁신도시로 이전 우선 고려	제2200152호 ('24.6.5.)	국토교통위원회

8) 전국혁신도시협의회 공동성명(기존 혁신도시로 공공기관 배치 촉구, 2023.1월, 7월)
 ↔ 비혁신·인구감소도시 공동성명(인구감소지역으로 이전 촉구, 2023. 3월, 5월, 11월)

법률안	대표 발의	주요내용	의안번호 (발의일)	소관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엄태영 의원	혁신도시 이전 원칙 → 혁신도시 또는 그 외 지역(비수도권) 이전	제2201379호 (’24.7.4.)	국토교통 위원회
인구감소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안	박상웅 의원	혁신도시 이전 원칙 → 인구감소지역 이전 원칙 우선	제2201808호 (’24.7.16.)	국토교통 위원회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상웅 의원	혁신도시 이전 원칙 → 인구감소지역 이전도 가능	제2201809호 (’24.7.16.)	국토교통 위원회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홍철 의원	공공기관 지방이전 시 혁신도시와 혁신도시 외 지역 간 균형 강화	제2204084호 (’24.9.19.)	국토교통 위원회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수현 의원	혁신도시 이전 원칙 → 인구감소지역 이전도 가능	제2213881호 (’25.11.4.)	국토교통 위원회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수현 의원	개별이전 시 인구감소지역 우선 고려	제2213882호 (’25.11.4.)	국토교통 위원회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광희 의원	개별이전 사유에 ‘지역 인구 유지 및 인구소멸 위기 대응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추가	제2217045호 (’26.2.25.)	국토교통 위원회

국토교통부는 현행법상 공공기관 이전 원칙을 변경하는 것은 각 지방정부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사항으로, 이전효과 등에 대한 검토와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우선될 필요가 있고,

공공기관 2차 이전 계획 수립 과정에서 이전효과를 감안하고 공론화 등을 거쳐 이전 원칙 등을 결정할 예정임을 고려하여, 개정안에 대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임.

문 의 처	02)6788-5578
-------	--------------

참고

공공기관 이전 현황(2026. 4월말 기준)

총 150개 : 혁신도시 109개, 세종시 20개, 개별이전 21개

강 원 (기관:11개, 인원:6,179명)

- 국립과학사연구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한국관광공사, 한국광해광업공단, 대한석탄공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대한적십자사, 국립공원공단, 한국도로교통공단,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충 북 (기관:11개, 인원:3,116명)

-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법무연수원, 국가기술표준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소비자원,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고용정보원

전 북 (기관:12개, 인원5,300명)

- 농촌진흥청, 지방자치인재개발원, 한국농수산대학교, 국립농업과학원, 국립식량과학원,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국립축산과학원,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한국전기안전공사, 국민연금공단,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식품연구원

광주·전남 (기관:16개, 인원:7,043명)

- 국립전파연구원, 우정정보관리원, 농식품인재개발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농어촌공사,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한국전력공사, 한전KDN(주), 한전KPS(주), 한국전력거래소

제 주 (기관:6개, 인원:752명)

- 국토교통인재개발원, 국제공무원교육원, 국제청주류면허지원센터, 국제상당센터, 국립기상과학원, 공무원연금공단

경 북 (기관:10개, 인원:5,561명)

- 우정사업조달센터, 농림축산검역본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종자원, 조달품질원,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한국전력기술(주), 한국도로공사, 한국교통안전공단

대 구 (기관:10개, 인원:3,262명)

- 중앙교육연수원, 중앙병역판정검사소, 신용보증기금,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사학진흥재단,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한국가스공사,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부동산원

경 남 (기관:11개, 인원:4,249명)

- 중앙관세분석소, 한국승강기안전공단, 한국저작권위원회, 한국남동발전(주),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세라믹기술원, 한국토지주택공사, 국토안전관리원, 주택관리공단(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국방기술품질원

울 산 (기관:9개, 인원:3,143명)

- 국립재난안전연구원, 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 에너지경제연구원, 한국동서발전(주), 한국석유공사, 한국에너지공단, 근로복지공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부 산 (기관:13개, 인원:3,457명)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국립해양조사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게임물관리위원회, 영상물등급위원회, 영화진흥위원회, 한국남부발전(주),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한국예탁결제원

세 중 (기관:20개,인원:4,143명)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과학기술정책연구원, 국토연구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산업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 한국교통연구원,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법제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한국환경연구원, 축산물품질평가원,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국가과학기술연구회, 건축공간연구원

개별이전 (기관:21개, 인원:7,035명)

오송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청,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한국보건복지인재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아산	국립특수교육원, 경찰대학, 경찰인재개발원, 경찰수사연수원
기타	국방대학교(논산), 관세국경인재개발원(천안), 중앙119구조본부(대구), 산림항공본부(원주), 해양경찰교육원(여수), 한국장학재단(대구), 한국국제교류재단(제주), 한국서부발전(주)(태안), 한국수력원자력(경주), 한국중부발전(주)(보령), 한국원자력환경공단(경주),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익산)

구 분		이전 완료기관	비 고
합계(150)		150개 (당초 153 → 변경 150)	
혁신 도시 (109)	계	109개 (당초 112 → 변경 109)	기관 통폐합으로 3개 기관 축소
	부산 (13)	국립해양조사원('12.12), 영상물등급위원회('13.9), 게임물관리위원회('13.10), 영화진흥위원회('13.10),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14.9), 한국남부발전(주)('14.10), 한국주택금융공사('14.11), 한국예탁결제원('14.11), 주택도시보증공사('14.12), 한국자산관리공사('14.12),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15.2), 한국해양수산개발원('15.3), 한국해양과학기술원('17.12)	
	대구 (10)	중앙병역판정검사소('12.12), 한국부동산원('13.8), 한국교육학술정보원('13.10), 한국산업단지공단('14.1), 한국사학진흥재단('14.3), 한국가스공사('14.9),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14.9), 신용보증기금('14.12),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15.7), 중앙교육연수원('15.10)	
	광주 전남 (16)	우정정보관리원('13.3), 농식품인재개발원('13.12),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14.2), 한국문화예술위원회('14.4), 한국콘텐츠진흥원('14.5), 국립전파연구원('14.6),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14.8), 한국농어촌공사('14.9), 한국전력거래소('14.9), 한국전력공사('14.11),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14.12), 한전KPS(주)('14.12), 한전KDN(주)('14.12), 한국농촌경제연구원('15.7), 한국인터넷진흥원('17.6),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19.1)	
	울산 (9)	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13.1),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14.2), 근로복지공단('14.3), 한국산업인력공단('14.5), 한국동서발전(주)('14.6), 한국석유공사('14.11), 에너지경제연구원('14.12), 국립재난안전연구원('15.12), 한국에너지공단('19.2)	
	강원 (11)	국립과학수사연구원('13.11),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13.12), 대한적십자사('14.5), 대한석탄공사('14.12), 한국관광공사('14.12), 한국광해광업공단('15.8), 한국도로교통공단('15.11), 국민건강보험공단('15.12), 건강보험심사평가원('15.12), 한국지방행정연구원('16.12), 국립공원공단('17.4)	(통합) 한국광물자원 공사+한국광해관리 공단 → 한국광해광 업공단('21.9)
	충북 (11)	한국가스안전공사('13.12), 국가기술표준원('14.5), 정보통신정책연구원('14.6), 한국소비자원('14.8), 한국고용정보원('14.9), 법무연수원('15.3), 정보통신산업진흥원('15.6),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16.9), 한국교육개발원('17.2), 한국교육과정평가원('18.2),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19.12)	
	전북 (12)	지방자치인재개발원('13.8), 한국국토정보공사('13.11), 한국전기안전공사('14.6), 국립농업과학원('14.7), 농촌진흥청('14.7),	

구 분		이전 완료기관	비 고
		한국농수산대학교('15.2), 국립식량과학원('15.3), 국립원예특작과학원('15.3), 국립축산과학원('15.3), 국민연금공단('15.6),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15.7), 한국식품연구원('17.9)	
	경북 (11)	우정사업조달센터('13.4),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13.12), 조달품질원('13.12), 대한법률구조공단('14.4), 한국교통안전공단('14.4), 국립종자원('14.7), 한국도로공사('14.11), 한국전력기술(주)('15.8), 농림축산검역본부('15.12),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16.3)	(주)한국건설관리공사 (폐지) → 국토안전 관리원('20.12) (폐지) 기상통신소 (10.4)
	경남 (11)	중앙관세분석소('13.1), 한국남동발전(주)('14.4), 국방기술품질원('14.5), 중소기업진흥공단('14.7), 한국산업기술시험원('15.3), 한국세라믹기술원('15.3), 한국토지주택공사('15.4), 한국저작권위원회('15.6), 주택관리공단(주)('16.6), 한국승강기안전공단('16.7), 국토안전관리원('17.12)	(통합) 한국시설안 전공단 → 국토안 전관리원('20.12) ※ 한국건설관리공사+한국 시설안전공단
	제주 (6)	국토교통인재개발원('12.12), 국립기상과학원('13.12), 국세공무원교육원('15.9), 국세상담센터('15.9), 공무원연금공단('15.9), 국세청주류면허지원센터('15.10)	
		20개 (당초 19 → 변경 20)	
세종시 (20)		한국개발연구원('13.12), 한국법제연구원('14.1), 한국조세재정연구원('14.10), 국가과학기술연구회('14.12), 과학기술정책연구원('14.12), 경제·인문사회연구회('14.12), 대외경제정책연구원('14.12), 산업연구원('14.12), 한국교통연구원('14.12), 한국노동연구원('14.12), 한국보건사회연구원('14.12), 한국직업능력연구원('14.12),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14.12), 한국환경연구원('14.12),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15.2), 축산물품질평가원('15.8),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15.9), 농림수산물교육문화정보원('15.9), 국토연구원('17.1), 건축공간연구원('15.8)	(신규지정) 건축공간 연구원 독립법인 승격('20.4)
		21개 (당초 22 → 변경 21)	
개별이전 (21)		관세인재개발원('08.2, 천안), 경찰인재개발원('09.11, 아산), 국립특수교육원('10.11, 아산), 한국보건복지인재원('10.11, 오송), 한국보건산업진흥원('10.11, 오송), 식품의약품안전처 ('10.12, 오송),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10.12, 오송), 질병관리청('10.12, 오송), 한국원자력환경공단('11.3, 경주), 경찰수사연수원('13.7, 아산), 산림항공본부('13.11, 원주), 해양경찰교육원('13.11, 여수), 중앙119구조본부('14.11, 대구), 한국중부발전(주)('15.1, 보령), 한국서부발전(주)('15.8, 태안), 한국장학재단('15.11, 대구), 한국수력원자력(주)('16.3, 경주), 경찰대학('16.4, 아산), 한국농업기술진흥원('16.8, 익산), 국방대학교('17.8, 논산), 한국국제교류재단('18.7, 제주)	(해산) 재외동포재단

자료: 국토교통부